

의안번호	제 597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20일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7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20일  
발 의 자 : 이숙애, 박형용,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최경천

**1. 제안이유**

-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발효에 따라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2013. 7. 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률은 1%에 불과한 상황임.
- 이에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충청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성년후견제도 홍보 및 이용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견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99호
- 다. 협의 : 복지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충청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충청북도의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1.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

2. 공공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

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이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 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 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교육에 드는 비용

#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사업명 :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
- 사업위치 : 충청북도
- 시행기관
  - (발달장애인)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치매노인) 도 광역치매센터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14개소)
  - (정신질환자) 복지부 → 재단, 직접 보조금 교부
    -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외 3개소
- 주요내용 : 후견활동, 후견심판청구지원, 후견인모집·관리, 후견인 추천 등

## 2. 비용 발생 요인

- 후견활동 및 심판청구 비용 지원 등

## 3. 관련조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사업)

##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후견활동 및 심판절차 비용  
5년간 657,678천원 정도 소요
- 추계의 전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및 심판절차비용 지원(예산인상율 9% 반영)
  - 치매노인 후견인 양성교육, 후견활동 및 심판절차 비용 지원  
(예산인상율 5% 반영)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추진하여 작성 제외
- 추계결과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657,678천원 ※연평균 131,535천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12,688	121,373	130,765	140,928	151,924	657,678
국 비	89,682	96,607	104,095	112,200	120,970	523,554
도 비	17,926	19,432	21,069	22,847	24,779	106,053
시군비	5,080	5,334	5,601	5,881	6,175	28,071
세 출	112,688	121,373	130,765	140,928	151,924	657,67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국80%, 도20%)	76,250	83,113	90,593	98,746	107,633	456,415
후견인 양성교육 (국70%, 도30%)	4,687	4,921	5,167	5,426	5,697	25,968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국80%, 도4%, 시군 16%)	31,751	33,339	35,005	36,756	38,594	175,525